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6-75호

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7.2.) 및 종로구고시 제2009-67호(2009.10.23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-78호(2009.12.11.)로 사업시행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2-89호(2012.12.21.) 및 종로구고시 제2016-39호(2016.4.15.)로 사업변경인가고시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22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
4. 정비구역의 면적 : 8,844.4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 :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(대표 이창희)
 - 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219 박영빌딩 403호
6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6년 7월 15일
7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층수 (지상/지하)	높이(m)	용도	비고
6,400.8	3,130.76	82,332.67	48.91	849.98	27/7	109.8	업무/판매시설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분	계	토지등소유자	체비지(일반분양)	보류시설	비고
업무시설	78,045.45	3,666.78	74,378.67	-	
판매시설	4,287.22	3,148.74	245.49	892.99	
합계	82,332.67	6,815.52	74,624.16	892.99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1)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

연번	지 번	지목	공부상 면적(㎡)	구역편입 면적(㎡)	용도폐지 면적(㎡)	소유자	비고
1	교남동3-2	도	6.3	6.3	1.6	국 (기획재정부)	

2)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

연번	종류	위 치	기반시설면적(㎡)	비용부담	비고
계			2,443.6		
1	도로	평동209-1~송월동68-4, 서대문광장~홍은동	2,320.4	시행자	무상귀속
2	공공공지	교남동6 일원	123.2		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: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

8. 기타관계도서 : 생략 (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☎02-2148-2693). 끝.